

스스로
지키는
우리 일터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재해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위험기계 및 설비 안전검사 제도안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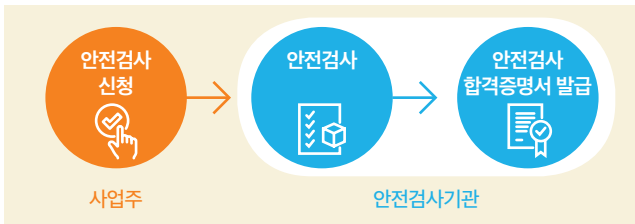
1

안전검사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기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안전검사의 주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안전검사 실시 ▶ 최초안전검사 실시 이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
이동식크레인 이삿짐운반용리프트 고소작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안전검사 실시 ▶ 최초안전검사 실시 이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안전검사 실시 ▶ 최초안전검사 실시 이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

안전검사 대상 및 적용범위

프레스/전단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m 이하인 산업용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압력용기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cm ²)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 사용압력이 2kgf/cm ² 미만인 경우 등 제외
곤돌라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국소배기장치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디아니신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6-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hexan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 4-다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곡물분진 망간 메틸렌디페닐디아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브롬화메틸 수은 스티렌 시클로hex산 아닐린 아세토니트릴 아연(산화아연)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루미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용접흄 유리규산 코발트 크롬 탈크(활석) 톨루엔 황산알루미늄 황화수소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원심기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제외 가.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 나.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 다. 원자력에너지 제품 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 라.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마.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안전검사 대상품별 검사 수수료

(단위 : 원)

안전검사대상		안전검사 수수료	
		정격 하중	금액
크레인	천장, 갠트리	10톤 미만	67,000
		50톤 미만	72,000
		100톤 미만	76,000
		200톤 이하	81,000
		500톤 이하	102,000
		500톤 초과	10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0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호이스트	5톤 미만	59,000
		5톤 이상	63,000
		20톤 이하	160,000
	타워	20톤 초과	160,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200톤	286,000
		200톤 초과	286,0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톤마다 4,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브, 기타	10톤 미만	102,000
		50톤 미만	109,000
		100톤 이하	118,000
		100톤 초과	118,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마다 118,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동식	-	59,000
	엔로우더	30톤 미만	170,000
50톤 미만		219,000	
50톤 이상		262,000	
리프트	-	54,000	
압력용기	내용적		
	2m ³ 미만		33,000
	5m ³ 미만		38,000
	30m ³ 미만		44,000
	40m ³ 이하		48,000
	100m ³ 이하		53,000
	100m ³ 초과	53,000원에 100m ³ 를 초과한 100m ³ 마다 5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프레스 및 전단기	압력 능력		
	50톤 미만		35,000
	200톤 미만		44,000
	300톤 이하		52,000
	500톤 이하		63,000
	500톤 초과	63,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6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롤러기	-	50,000	
사출성형기	형체겉력		
	2,942kN 미만		44,000
	5,884kN 이하		52,000
	5,884kN 초과	52,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5,884kN마다 5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원심기	-	50,000	
곤돌라	-	54,000	
국소 배기장치	후드 배기유량		
	150m ³ /min 이하		54,000
	500m ³ /min 이하		76,000
	500m ³ /min 초과	76,000원에 500m ³ /min을 초과한 500m ³ /min마다 7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소작업대	-	54,000	
컨베이어	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		
	20m 이하		58,000
	20m 초과	58,000원에 20m초과한 10m마다 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용 로봇	셀내 로봇 대수		
	1대		66,000
	1대 초과	66,000원에 1대 초과한 1대마다 1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해 검사 프로그램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시 안전검사 면제

인정절차 및 방법

▶ 인정절차



- 1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신청서와 관련서류 2부를 첨부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 2 안전보건공단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 15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
- 3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신청한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 받은 경우 사업주는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함

▶ 자율검사 프로그램인정에 따른 검사방법

- 사업주 스스로 검사 실시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실시

업무처리기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수수료

125,000원 + 출장비(10,000원 / 사업장)
※ 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대상품

안전검사 대상품과 동일함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유효기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인정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에 따른 검사주기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

다만,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6개월 주기

신청시 제출서류

- 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신청서 1부
- ②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현황
-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현황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관리방법(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 증명서류로 갈음)
- ④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 ⑤ 향후 2년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수행 계획
- ⑥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 시)
- ⑦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관련법규 및 규정 등

▶ 관련법령 및 고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부터 제100조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부터 제135조까지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2호)
-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3호)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1호)

▶ 과태료

위반내용	과태료	관련근거
안전검사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검사기관

안전보건공단 1544-3089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07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566-1277	한국안전기술협회 031-319-4321



안전검사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대표전화

1544.
3089

안전보건공단 산하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영등포동2가)

Tel 02)6711-2966 | Fax 02)6711-2969

담당업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서울특별시, 강원도(철원군 제외), 경기도 가평군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부곡동 64-31)

Tel 051)520-0570 | Fax 051)520-0579

담당업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0, 21층

Tel 053)609-0566 | Fax 053)421-8627

담당업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

Tel 032)510-0669 | Fax 032)579-8192, 032)578-9202

담당업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가평군 제외), 강원도 철원군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빌딩 9층

Tel 062)949-8723 | Fax 062)949-8768

담당업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문지동 104-7) 3층

Tel 042)620-5645 | Fax 042)632-3619

담당업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표전화
02.860.
7072

대한산업안전협회 산하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지회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할지역
서울지역본부	Tel 02-869-7873~5 Fax 02-856-0556	서울특별시(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중랑구)
부산지역본부	Tel 051-804-5454 Fax 0507-351-7021	부산광역시 전역
대구지역본부	Tel 053-710-3100 Fax 0507-351-7028	대구광역시 전역 경상북도(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칠곡군)
중부지역본부	Tel 032-363-3300 Fax 0507-351-7033	인천광역시 전역, 강화군
대전지역본부	Tel 042-628-2160~2 Fax 0507-351-7044	대전광역시 전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광주지역본부	Tel 062-943-0156~8 Fax 0507-351-7039	광주광역시 전역,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경기지역본부	Tel 02-456-6644 Fax 0507-351-7034	서울특별시(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중랑구)
성남지회	Tel 031-777-9170 Fax 0507-351-7014	경기도(광주시, 성남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하남시)
경기북부지회	Tel 031-876-0281 Fax 0507-351-7016	경기도(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동구,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강원도(철원군)
경기남부지회	Tel 031-665-2416 Fax 0507-351-7038	경기도(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경기서부지회	Tel 031-382-9988 Fax 0507-351-7036	경기도(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 부천시 원미구, 안양시,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안산지회	Tel 031-402-3998 Fax 0507-351-7035	경기도(시흥시, 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강원지회	Tel 033-734-6201~2 Fax 0507-351-7018	강원도(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울산지회	Tel 052-267-1500 Fax 0507-351-7022	울산광역시 전역



안전검사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대한산업안전협회 산하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지회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할지역
창원지회	Tel 055-281-3936~7 Fax 0507-351-7023	경상남도(의령군, 창녕군, 창원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진해구, 함안군)
경남동부지회	Tel 055-387-1343 Fax 0507-351-7024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회	Tel 055-752-4030 Fax 0507-351-7026	경상남도(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진주시,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경북북부지회	Tel 054-451-1221 Fax 0507-351-7030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지회	Tel 054-277-0163~5 Fax 0507-351-7032	경상북도(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포항시,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전북지회	Tel 063-212-4022~5 Fax 0507-351-7040	전라북도 전역
전남지회	Tel 061-722-2801 Fax 0507-351-7041	전라남도 전역
제주지회	Tel 064-753-8237~8 Fax 0507-351-7043	제주도 전역
충북지회	Tel 043-236-0395~8 Fax 0507-351-7045	충청북도(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청원군,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청원구, 청주시 흥덕구)
충북북부지회	Tel 043-855-5171 Fax 0507-351-7046	충청북도(단양군, 음성군, 제천시, 충주시)
충남북부지회	Tel 041-522-4011~3 Fax 0507-351-7047	충청남도(아산시,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충남서부지회	Tel 041-669-1480 Fax 0507-351-7048	충청남도(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대표전화
1566.
127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산하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지회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할지역
서울지역본부	Tel 02-801-0318 Fax 02-801-0369	서울특별시(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종랑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 서초구, 동작구) 경기도(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서울북부지사	Tel 02-948-3337 Fax 02-948-2936	서울특별시(종로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경기도(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포천시) 강원도(춘천시, 철원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경기강원 지역본부	Tel 031-289-3400~5 Fax 031-289-3406	경기도(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과천시,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이천시, 여주시) 강원도(영월군, 원주시, 횡성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경인지역본부	Tel 032-425-0685 Fax 032-427-0687	인천광역시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충청지역본부	Tel 042-864-3400 Fax 042-633-0453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역 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천안지사	Tel 041-523-0454~6 Fax 041-551-0455	충청남도(천안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부산경남 지역본부	Tel 051-811-6500~3 Fax 051-811-6505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대구경북 지역본부	Tel 053-560-1234 Fax 053-289-306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역
경남동부지사	Tel 055-237-8860 Fax 055-237-2131	경상남도(양산시 제외)
울산지사	Tel 052-275-8775 Fax 052-275-5710	울산광역시
호남지역본부	Tel 062-367-8305 Fax 062-367-7509	광주광역시, 전라도 전역, 제주도



안전검사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대표전화

031.319.
4321

한국안전기술협회 산하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지회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할지역
경인지역본부	Tel 032-429-8504 Fax 032-429-8506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서울지회	Tel 02-894-8504 Fax 02-894-8506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 구리, 포천, 연천, 가평), 강원도(춘천, 화천, 양구, 홍천, 인제, 철원)
경기남부지회	Tel 031-268-8513 Fax 031-268-8515	경기도(수원, 화성, 용인)
경기서부지회	Tel 031-431-3139 Fax 031-431-0223	경기도(안산, 시흥,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
평택지회	Tel 031-654-8504 Fax 031-654-8507	경기도(평택, 오산, 안성)
경기동부지회	Tel 031-751-3122 Fax 031-752-4122	경기도(성남, 이천, 여주, 광주, 하남, 양평) 강원도(강릉, 고성, 동해, 삼척, 속초, 양양, 영월, 태백, 정선)
대전지역본부	Tel 042-538-3060 Fax 042-523-9001	대전광역시 전역, 충청도(논산, 공주, 계룡, 세종, 금산, 보령, 서산, 홍성, 서천, 부여, 청양, 태안)
충남지회	Tel 041-570-6446 Fax 041-570-6447	충청도(천안, 아산, 예산, 당진)
충북지회	Tel 043-216-8504 Fax 043-216-8505	충청도(청주, 진천, 보은, 증평, 영동, 괴산, 옥천, 충주, 제천)
광주지회	Tel 062-971-8666 Fax 062-971-7077	광주광역시 전역, 전라도(나주, 담양, 화순, 곡성, 장성, 함평, 영광, 구례, 여수, 순천, 보성, 고흥, 광양)
전남지회	Tel 061-464-6640 Fax 061-971-7077	전라도(목포, 신안, 진도, 무안,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장흥)
전북지회	Tel 063-244-3122 Fax 063-244-4122	전라북도 전역
부산지역본부	Tel 051-362-8100 Fax 051-365-3930	부산광역시 전역
울산지회	Tel 052-221-4090 Fax 052-221-4092	울산광역시 전역
경남지회	Tel 055-237-4824 Fax 055-237-4827	경상남도(창원, 마산, 진해, 함안, 창녕, 의령, 진주, 사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해, 합천, 통영, 거제, 고성)
경남동부지회	Tel 055-364-8181 Fax 055-364-1661	경상남도(김해, 양산, 밀양) 대구광역시 전역
대구지회	Tel 053-588-9303 Fax 053-588-9306	경상북도(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군위, 칠곡(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 제외))
경북지회	Tel 054-473-8503 Fax 054-473-8505	경상북도(구미, 김천, 영주, 상주, 문경, 봉화, 안동, 예천, 의성, 영양, 청송, 칠곡(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
포항지회	Tel 054-281-8504 Fax 054-281-8505	경상북도(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